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80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9. 2.
3. 회 부 일: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4호).

Ⅲ. 검토의견

1.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4호).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u><신 설></u>	<u>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u>
<u><신 설></u>	<u>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u>
<u><신 설></u>	<u>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u>
<u><신 설></u>	<u>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u>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¹⁾.

그런데 현행법상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장애인·유소년·노인을 지도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음([참고 1])²⁾.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이에 개정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체육지도자의 지도 대상을 고려할 때 아동·장애인·노인을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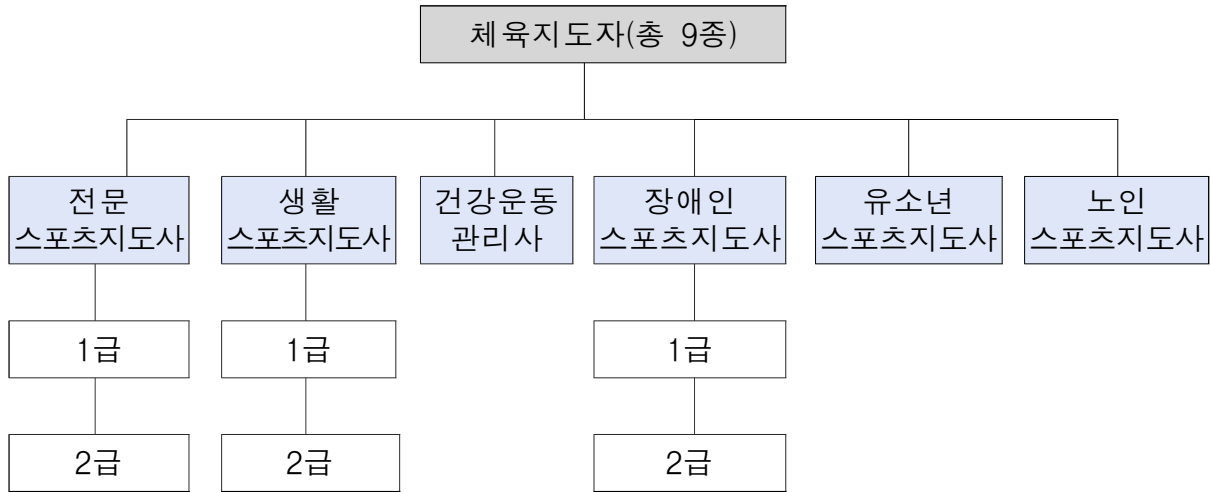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① 성폭력범죄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③ 아동학대관련범죄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 ⑤ 노인학대관련범죄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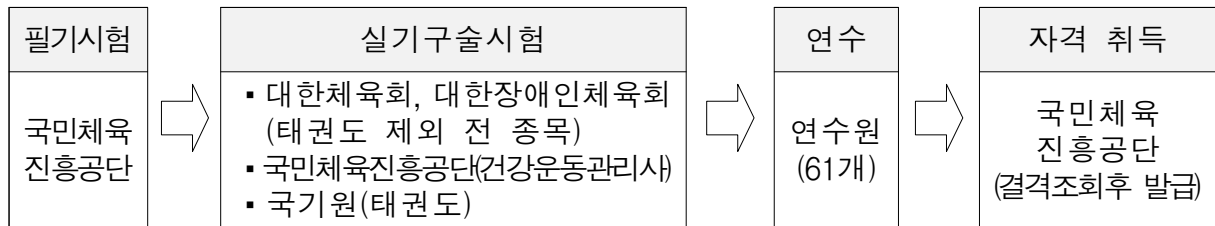
02)6788-5375

[참고 1]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 유형: 9종



○ 취득절차: 자격검정(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 합격 후 연수 이수



○ 자격발급 현황(단위: 명)

년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인원	248,951	16,710	12,180	14,673	16,633	1,843	27,772	22,037	23,716	384,515